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규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26-70
----------	---------

발의연월일 2026. 9. 2.

장규철·이관호·김경순

발 의 자 태화순·정락재·이병학

김승자 의원(7인)

1. 제안이유

고령운전자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통안전 교육 및 정보제공, 예방사업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진반납" 및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부,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추가하고, 관련 법인·단체 및 전문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재정지원 대상 및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나. 입법예고: 2026. 9. 2.~2026. 9. 7.

다. 비용추계: 붙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3.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란 고령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에 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부

4.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를 삭제하고, 제6조(교육)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를 “제8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구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운전면허 자진반납: 30만 원 이내의 교통카드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미추홀 사랑상품권
2.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3.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란 고령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에 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 ----- ----- ---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3. (생 략)

<신 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
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
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3.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
커 제작·배부

4.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
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
하여 추진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
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
화 조성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
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u>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u> <u>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 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u>
<u><신 설></u>	<u>제7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 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 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고령운전자와 구민에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7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u>	<u>제8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고 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1. 운전면허 자진반납: 30만 원 이내의 교통카드 또는 「인천 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미추홀사랑상품권</u> <u>2.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비</u> <u>제9조(지원금의 반환) ----- 제8조-----</u>

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2. (생략) <u><신설></u>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u>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②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20. 12. 22.>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건설차면허

2) 소형건설차면허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効)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 2024.9.25., 2025.3.12.>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3.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란 고령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에 차선 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
4. “스마트 정보교육”이란 교통 이용과 관련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료 또는 정보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1. 운전면허 자진반납: 30만원 이내의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사랑상품권
2.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비

3. 스마트 정보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9.25.], [제목개정 2025.3.12.]